

## 연말정산 주요문의사항(FAQ)

[사원등록]	
Q01	부양가족명세 탭에서 본인의 기본공제여부가 여로 체크가 안되어 있으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A01	사원등록에서 CTRL+F11 기능키로 본인을 추가 합니다.
Q02	부양가족명세에서 이전년도에 20세이하에 해당되었지만 당해년도에 20세 이상인데 20세이하로 체크 되어있습니다.
A02	마감후 이월 시 당해년도 기준으로 나이를 자동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사원등록에서 상단에 F7 추가공제를 클릭하여 당해년도 기준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
[급여자료입력]	
Q03	연말정산 소득세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새로불러오기시 연말정산 자료 반영안됩니다.
A03	이전년도와 당해년도 사원등록에 사번,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가 동일해야 자동 반영됩니다.
Q04	연말정산 소득세 분납금액 계산 및 적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04	F7중도퇴사자정산▽_F11분납적용을 클릭->연말정산불러오기->분납(환급)계산->분납적용(Tab) 합니다. 참고로 분납적용은 귀속월 2월~4월까지 적용가능하며, 지급연월은 동일연도 12월까지 가능합니다.
Q05	연말정산분을 급여자료입력에 반영후 급여대장을 인쇄하면 그외공제로 집계되어 인쇄됩니다.
A05	공제항목이 많아서 그외 공제항목으로 집계되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	
Q06	국세청 PDF 자료 불러오기시 특정사원에 대해 PDF 불러오기 되지 않으며, 적용되지 않는 경우
A06	사원등록 메뉴에 동일한 주민번호가 있거나 다른사원의 부양가족명세에 동일한 주민번호가 있는경우로 주민번호 중복된 경우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07	외국인 근로자에대해 PDF 불러오기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A07	PDF의 외국인등록번호 확인시 사원등록의 외국인등록번호와 다르게 입력되어 불러오기 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사원등록의 등록번호를 수정 후 다시 업로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Q08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입력시 공제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현상
A0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함께 공제받는경우로 300만원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09	중전근무지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 현근무지에서 감면을 받지않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설정방법?
A09	사원등록 메뉴의 추가사항탭 11.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감면여부 '부' 로 설정 후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소득명세탭의 종(전) 란 12.감면기간 에서 <b>F2키를 클릭하여</b>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입력시 연말정산입력탭 세액감면 5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란에 중전근무지의 급여가 반영되며, ▶클릭시 2.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53-1) 의 (중)전 총급여액 란에도 반영됩니다.
Q10	<오 류> [주(현)근무처 레코드 - 자녀세액공제] 소득자[홍혜정] 생년월일[XX-XX-XX] 일련번호 [000001] 라인번호[3][W1Z20C118] 자녀세액공제금액 (38,492)은부양가족명세의 자녀인원수로 산정한 계산값(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A10	연말관계란 4번선택해야 하는데 5번으로 잘못입력된 경우입니다.
Q11	주택마련저축_청약저축 납입액 입력했는데 공제금액 반영되지 않는 현상
A11	세대주만 공제 가능한데 해당 사원은 세대원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Q12	기부금지출액이 있는데 표준세액공제 받으면서 공제금액 없는경우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2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여 13만원 반영되어 공제된 것이므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Q13	연말정산현황에 좌측하단 집계시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은 비과세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A13	해당수당의 경우 감면코드로 비과세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Q14	외국인 비거주자인데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A14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중 본인분,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Q15	초등학생 3명인데 연말정산입력탭의 공제대상금액이 일부 금액만 반영되어 잘못 나옵니다.
A15	부양가족소득명세탭 교육비란 지출액옆 구분란 입력이 안되어 있는 경우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16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지역분 및 그외 연말정산시 금액을 직접 추가로 입력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16	부양가족소득공제 탭 하단의 보험료란을 더블클릭 후 보험료 등 공제대상금액 팝업창 정산란에 금액을 입력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입력탭에서 F8부양가족불러오기 후 31.국민연금보험료, 33. 보험료란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Q17	월세등소득공제 탭의 3.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1)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은 어떤것을 작성하는지? 대주는 무엇인지?
A17	거주자간, 집주인 혹은 개인간 주택차입으로 인한 차입금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대주는 돈을 빌려준 집주인 혹은 개인입니다.

Q18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경우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되지 않는데 pdf볼러오기시 반영됩니다.
A18	pdf볼러오기시 기본공제 유무 상관없이 금액 반영됩니다. 유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9	그밖의 소득공제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금액이 있는데 농특세 반영되지 않습니다.
A19	15.12.15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으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농특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20	[변환오류] 총급여가 근무처별 소득명세서 [계(주현+종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A20	종전근무지 사업자등록번호 , 근무기간 누락된 경우인지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Q21	사원등록 추가사항에 50%로 반영했습니다.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 소득명세탭 18-24중소기업취업 청년에 소득금액전체를 가져옵니다.
A21	50%감면이라는 것은 감면자의 총 급여에서 50%만 세액을 감면해준다는 것으로 해당란에는 감면기간의 급여가 전체 반영되는 것이 맞으며, [연말정산입력] 탭에서 50%로 계산된 세액이 반영됩니다.
Q22	PDF볼러오기시 특별소득공제 금액이 있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22	표준세액공제13만원이 적용된 경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상단에 참고: 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분 참고
Q23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 총 급여액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총급여액이 틀립니다.
A23	급여자료입력에서 매월 급여를 조회 후 상단에 재계산-과세/비과세재계산만 체크후 재계산 한다음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서 F6자료갱신 합니다.
Q24	부양가족소득공제에 부녀자 체크가 되어있는데 연말정산입력에서 부녀자 추가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A24	연말정산입력탭에서 23.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Q25	종전근무가 2개이상인 경우 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A25	상단에 종전>>키를 클릭하면 추가로 종전 근무지를 더 입력 할 수 있습니다.
Q26	부양가족소득명세에 20세이하 자녀가 있는데도 부양가족에 체크가 안됩니다.
A26	사원등록에서 해당사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Q27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_감면율이 2개 이상인데 한도가 150만원을 초과하여 계산됩니다.
A27	감면을 중 70%+90%에 해당하는 공제만 150만원한도로 계산하며 그외에 감면은 한도가 없습니다.

**[기부금명세서]**

<b>Q28</b>	<b>정치자금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나요?</b>
<b>A28</b>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이하)분을 포함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이하)분은 기부금한도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b>Q29</b>	<b>이월 기부금이 있고 당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공제순서가 어떻게 되나요?</b>
<b>A29</b>	동일 기부금 중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당해 연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먼저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된 기부금 세액공제하나, 2013.12.31.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 이월액은(기부연도가 빠른기부금부터 공제)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먼저 소득공제 합니다.
<b>Q30</b>	<b>pdf업로드 후 기부금 [연말정산입력탭] 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되는데 정확한 공제금액이 반영되는 것인지요?</b>
<b>A30</b>	PDF업로드를 하면 [연말정산입력]탭에 전액공제대상으로 인식하여 세액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PDF업로드 후 [부양가족소득공제탭]하단 기부금을 클릭하여 [기부금조정]탭에서 해당연도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메뉴종료시 기부금 확인사항은 참고사항이므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않고 이월하는 사원이라면 종료(ESC)하시기 바랍니다.)
<b>Q31</b>	<b>전년도 기부금명세서에 이월금액이 있는데 전년도 불러오기시 이월이 안됩니다.</b>
<b>A31</b>	이전년도와 당해년도에 사원등록 메뉴의 사번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합니다.
<b>[의료비지급명세서]</b>	
<b>Q32</b>	<b>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가 넘었는데 공제금액 반영되지 않는 경우</b>
<b>A32</b>	1.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확인 2.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보다 특별세액공제금액이 더 적지는 않은지 확인 상단의 참고:특별소득(세액)공제적용분 클릭
<b>Q33</b>	<b>pdf불러오기 후 의료비 공제금액이 없는 사원도 의료비지급명세서에 불러오기 됩니다.</b>
<b>A33</b>	PDF로 업로드시 총급여의 3%초과 등 공제요건 무시하고 PDF내용 전체 업로드 되지만 전자신고 제작시에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세액공제가 있는 사원만 자동으로 제작이 됩니다.
<b>Q34</b>	<b>의료비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b>
<b>A34</b>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서식입니다.
<b>Q35</b>	<b>전자신고 제작시에 의료비명세서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나요?</b>
<b>A35</b>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료비) 제작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의료비명세서 (공제금액 있는 사원만 자동인식)는 같이 제작됩니다. ※ 변환시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각각 변환해야 합니다.

Q36	지급명세서전자신고서 의료비명세서(CA~)가 제작이 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A36	의료비지급명세서 또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메뉴의 부양가족소득공제탭에있는 의료비 팝업창을 한번도 실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PDF업로드후 의료비지급명세서 또는 의료비 팝업창을 한번이라도 실행해야만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정상 제작됩니다.
<b>[근로소득공제신고서]</b>	
Q37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서 부양가족을 추가로 등록 했는데 사원등록 및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서 추가된 부양가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A37	부양가족 추가는 해당메뉴에서 입력했다고 반영되지 않으며 사원등록 및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서 직접 입력후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반영해야합니다.
Q38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을 완료 후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조회하면 데이터 반영이 안됩니다.
A38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엑셀 및 공제신고서 PDF로 불러온 후에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에 반영하기 위한 메뉴 입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을 완료했다고 해서 해당 자료가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Q39	SF3공제신고서PDF불러오기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PDF를 불러오는게 아닌가요?
A39	공제신고서PDF는 간소화PDF와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한 별도의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해당PDF를 불러옵니다.
Q40	PDF로 저장시 인쇄할 페이지를 지정해도 전체 페이지가 저장됩니다.
A40	PDF 저장 클릭후 팝업창에서 옵션-기본옵션-저장영역에서 저장영역을 설정 후 저장하면 됩니다.
<b>[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b>	
Q41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없어서 입력 안하고 변환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A41	비영리법인인 경우 고유목적번호를 확인후 회사등록에 법인등록번호 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전자신고서 필수사항으로 빈란으로 전자신고 불가능합니다.
Q42	지급조서 변환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험료부분에 숫자형식이 아닙니다. 라는 에러 발생합니다.
A42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에 대해서 음수값이 있는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해당 부부는 공제금액이 음수일수가 없기에 0원으로 맞추거나 아니면 서면신고 하셔야 합니다.
Q43	지급조서 변환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에 항목 숫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A43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에서 현근무지 및 종전근무지 입력시 기납부세액에 음수로 입력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종전근무인 경우면 결정세액으로 입력 하고 현근무지에는 급여자료입력에서 소득세 확인후 자료갱신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Q44	매월 및 반기신고자의 연말정산 및 분납적용 신고가능월은 어떻게 되나요?
A44	<p>(1) 매월신고 정기신고시 근로소득연말정산(A04,A05,A06) 신고는 03월~12월까지가능합니다.</p> <p>참고)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부터 분납금액 납부에 대한 신고분(기존 4~5월 신고분)의 경우는 귀속연월만 제한하며 지급연월은 귀속연월과 동일한 연도의 12월까지 허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p> <p>(2) 반기신고 정기신고시 01월, 03월, 07월에 신고 가능합니다. 단, 03월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환급인 경우만 가능하며 제출연월 03월, 지급연월은 02월, 귀속연월 01월로 기재합니다.</p>
Q45	매월신고자 이며 귀속과 지급이 틀린 경우 신고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45	귀속 2월~2월 지급 2월~2월로 하여 연말정산분을 먼저 적용하여 마감 한후에 귀속 1월~1월 지급 2월~2월로 1월 귀속 급여분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서 두장으로 신고합니다.
Q46	연말정산에 대한 분납으로 적용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분납금액에 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A46	급여자료입력에서 먼저 분납 적용을 완료 한 후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분납적용에 [예]로 선택해야 분납금액이 반영됩니다.
Q47	반기신고자인 경우에도 무조건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신고를 해야하나요?
A47	<p>반기신고인 경우 7월10일까지 연말정산과 6개월 급여신고 함께 합니다.</p> <p>단,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당월지급인 경우 귀속 2018년1월~2월, 지급 2018년1월~2월로 익월지급인 경우 귀속 2017년12월~2018년1월, 지급 2018년1월~2월로 선택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p>
Q48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는 어디에서 입력하나요?
A48	상단에 F4 제출자 정보를 클릭하여 하단에 국세환급금계좌신고에 입력 합니다.
[사업소득자등록]	
Q49	부양가족에서 사업자 본인에 이름 및 주민번호가 잘못 반영되어있습니다.
A49	좌측 성명과 주민번호를 재입력 하시면 됩니다.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Q50** 익월지급시 귀속기준으로 불러오면 17년 1월분 반영이 안됩니다.

**A50** 2017년도에 사업소득자료 입력 시 연말정산 [여]로 체크한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

**Q51** 12.소득(수입금액) 및 건수가 사업소득자료입력한 자료 합계금액과 불일치 합니다.

**A51**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소득(수입금액) 및 건수 부분에 소액부 징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여서 소액부 징수 금액을 제외하고 비교 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영수증)]

**Q52** 변환시 (필요경비)에 입력된 필요경비가 소득구분별 필요경비와 다릅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A52** 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필요경비 입력시 소수점이있는 경우에 발행하는 오류입니다.

**Q53** 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서는 주민번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A53** 기타소득자료입력에서 내외국인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비거주의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Q54**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에 법인명 및 소재지가 빈란으로 조회됩니다.

**A54** 회사등록 메뉴에서 추가사항탭에 영문회사명, 영문주소, 영문대표자명을 입력후 재조회 하면 됩니다.